

'26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(예수대학교)

1.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□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

- 사업 기본요건*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(예정)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

*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확인자

- 배점점수표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

- 배점방식

| 배점점수 | 50점 | 25점 | 25점 | 가점 또는 감점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점 항목 | 학자금지원구간 | 성적 | 직전학기 선발여부 | 장애학생 등(가점) 직전학기 근로포기자 등(감점) |

-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

|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| | 평균성적 환산점수 | | 직전학기 근로여부 | | 가점 또는 감점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|-----|
| 구분 | 배점 | 구분 | 배점 | 구분 | 배점 | 구분 | 배점 |
| 0구간 (기초,차상위포함) | 50 | 100 ~ 95 | 25 | 직전학기 미선발자 | 25 | 등록 장애학생 | +10 |
| 1구간 | 45 | 94 ~ 90 | 22 | 직전학기 선발자 | 15 |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) | +5 |
| 2구간 | 40 | 89 ~ 85 | 19 | | | 직전학기 근로지 담당자 평가 35점 이하~30점 초과인 자 | -2 |
| 3구간 | 35 | 84 ~ 80 | 16 | | | 직전학기 근로지 담당자 평가 30점 이하~25점 초과인 자 | -5 |
| 4구간 | 30 | 79 ~ 75 | 13 | | | 직전학기 근로지 담당자 평가 25점 이하인 자 | -10 |
| 5구간 | 25 | 74 ~ 70 | 10 | | | 직전학기 근로 포기자 (직전학기 배정 근로 시간 50% 미만 소진한 자는 근로포기자로 간주) | -10 |
| 6구간 | 20 | | | | | | |
| 7구간 | 15 | | | | | | |
| 8구간 | 10 | | | | | | |
| 9구간 | 5 | | | | | | |
| 미확인 | 0 | | | | | | |

※ 신입생 및 편입생, 입학 후 휴학생은 입학성적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성적 환산점수 부여함(신(편)입학 학기에 한함)

○ 합산점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선발 기준

- (1순위) 학자금지원구간 :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되, 학자금지원구간이 동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우선 선발
- (2순위) 성적 : 학자금 지원구간이 동일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 상위자 우선 선발(소수점 이하 성적 확인, 직전 학기 성적이 동일한 경우, 전체 학기 누적 성적 확인)
- (3순위) 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 등 :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 우선 선발

○ 대체장학생 선발

-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: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합산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
- 교외근로의 대체장학생 선발 시 해당 근로지의 성격에 따라 전공 및 학년을 고려하여 후순위자 우선 선발 가능

※ 예시1 : 교외근로지에 간호학부 전공 학생을 배정해야 하며, 대체장학생 1순위자가 사회복지학부이고 2순위자가 간호학부인 경우, 2순위자 우선 선발 가능

※ 예시2 : 교외근로지에 간호학부 3,4학년을 배정해야 하며, 대체장학생 1순위자가 간호학부 2학년이고 2순위자가 간호학부 3학년일 경우, 2순위자 선발 가능

○ 근로지 특성에 따른 근로지 배치 기준

- 근로지 특성 또는 요청에 따라 예수병원(교외) 근로의 경우 간호학부 학생 중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배정함